

의안번호	제 731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#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5월 31일

#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

의안 번호	73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5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지역 중소·벤처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와 충청 지자체 및 지역공공기관이 공동 출자·조성하는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출자 목적
  -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소재 민간·공공기관 등의 자율참여와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하는 권역별 뉴딜펀드 조성
- 출자 근거
  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
  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
  -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, 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
- 출자 내역 :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당해 펀드 출자
- 기대 효과
  -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·벤처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로 관내 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및 신규 일자리 창출
  - 지역혁신기업에 투자 확대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생태계를 개선하여 지역균형 뉴딜 촉진

## 3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## □ 출자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경제기업과 혁신창업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강성환	박은숙	김정선	220-3342

조 합 명	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																				
출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(벤처투자조합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 : 한국벤처투자</li> <li>- 유한책임조합원 : 충청지자체(충북, 충남, 대전, 세종), 수자원공사, 한국모태펀드 등</li> <li>- 존속기간 : 2021년 ~ 2033년(12년) ※ 투자기간 5년</li> <li>- 펀드규모 : 900억원(지자체* 150, 수자원공사 300, 한국모태펀드 450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<u>충북 50억원, 대전 70억원, 충남 15억원, 세종 15억원</u></li> </ul> </li> <li>- 투자대상 : 충청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·벤처기업, 물산업기업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출 자 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자 예정금액 : 5,000백만원(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5,000)</li> <li>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 : 백만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rowspan="2">사업기간</th> <th colspan="4">도 비</th> </tr> <tr> <th>계</th> <th>2021년</th> <th>2022년</th> <th>2023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펀드 출자</td> <td>2021 ~ 2023 (3년간)</td> <td>5,000</td> <td>2,000</td> <td>2,000</td> <td>1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구 분	사업기간	도 비				계	2021년	2022년	2023년	펀드 출자	2021 ~ 2023 (3년간)	5,000	2,000	2,000	1,000
구 분	사업기간	도 비																			
		계	2021년	2022년	2023년																
펀드 출자	2021 ~ 2023 (3년간)	5,000	2,000	2,000	1,000																
출 자 필 요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역의 산업 및 기업특성을 반영한 지역 거점 투자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 생태계를 개선하여 지역균형 뉴딜 촉진</li> <li>○ 중소·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신기술개발 사업화 활성화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제1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④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벤처투자조합</li> </ol> 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지도감독 부서인견 (중 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앙정부-지자체-공공기관 공동으로 지역 중소·벤처기업 사업화 촉진 지원을 통해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</li> <li>○ 지역 내 안정적 투자재원을 기반으로 투자→성장→회수→재투자의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을 통한 혁신창업모델 구축 및 일자리 증대효과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</li> <li>2. 출자출연 사업계획서</li> </ol>																				

# 1-① 관리 · 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##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해당없음

## 2 출자금 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정부 (한국벤처투자)-충청지자체-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지역 유망산업에 중점 투자하는 충청권역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균형 뉴딜 촉진에 기여
- 지역 내 장기 지속 가능한 안정적 투자재원을 기반으로 투자 → 성장 → 회수 → 재투자의 선순환적인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
- 창의적 아이디어 및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·벤처기업 투자를 통한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회 마련
-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 거점 신산업 관련 창업육성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에 대해, 도 출자계획에 따라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50억원을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 3 출자금 검토

(단위 : 억원, %)

출자자	전체규모	최초 약정액 ('21)	1차 증액 ('22)	2차 증액 ('23)	출자비율	
<b>합 계</b>	<b>912</b>	<b>304</b>	<b>304</b>	<b>304</b>	<b>100</b>	
LP	충청지자체	150	50	50	16	
	<b>충북</b>	<b>(50)</b>	<b>(20)</b>	<b>(10)</b>	<b>(5)</b>	
	한국수자원공사	300	100	100	33	
	한국모태펀드	450	150	150	50	
GP	한국벤처투자	12*	4	4	4	1

※ 출자자 상황에 따라 출자액 변동 가능

※ 한국벤처투자 12억 출자 : 업무집행조합원(GP)이 벤처투자조합 운영을 위해 출자금 총액 1%이상 출자의무

**근거법령**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(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)

4.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

# 1-② 출자 사업계획서

사업명	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금	구분	출자	5,000백만원
주관부서	경제기업과		출연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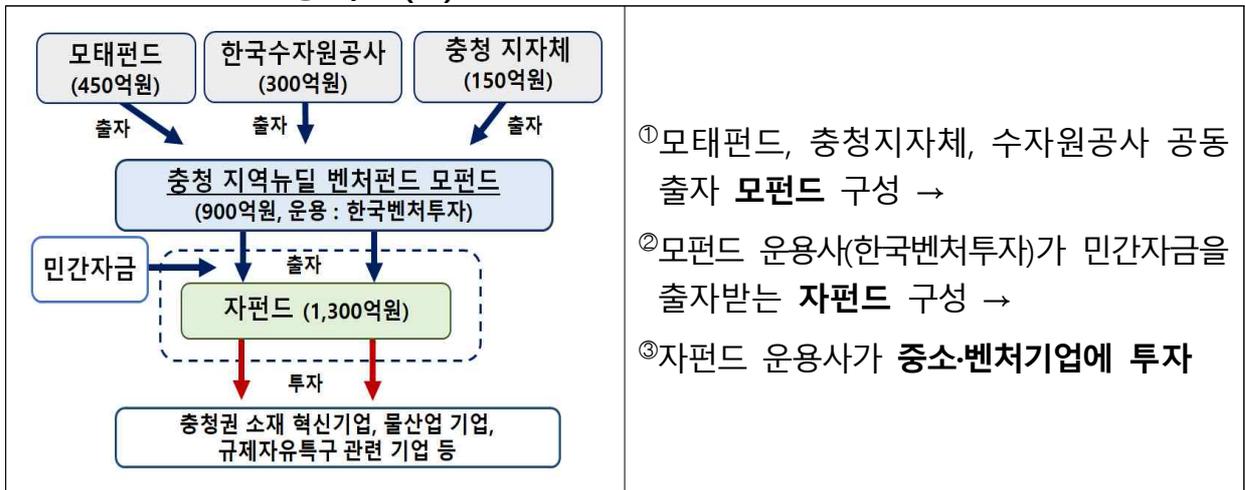
## □ 목적 및 필요성

- 지역의 산업 및 기업특성을 반영한 지역거점 투자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 생태계를 개선하여 지역균형 뉴딜 촉진
  - ※ 충청권 지자체-한국수자원공사-한국벤처투자 펀드 조성 업무협약(21.3.29.)
- 창의적 아이디어 및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·벤처기업 자금난 해소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여

## □ 출자개요

- 사업명 :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
- 존속기간 : 2021년 ~ 2033년(12년) ※ 투자기간 5년
- 조성규모 : 모펀드 900억원(모태펀드 450, 수자원공사 300, 충청지자체 150)
  - 모펀드 결성 후 민간자금 400억원 출자받아 자펀드 총 1,300억원 규모로 결성
- 출자금액 : 50억원(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원 / 3년간)
- 투자대상 : 충청지역·규제자유특구 내 중소·벤처기업, 물산업 기업 등
- 운용구조

### < 펀드 운용 구조(안) >



## □ 산출기초

-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 산출기초
  - 조합원 출자약정 : 900억원(모태펀드 450, 수자원공사 300, 충청지자체 150)
  - 도 출자계획 : 50억원('21년 20, '22년 20, '23년 10)

### 【 연도별 출자 내역 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'21년	'22년	'23년
출자금	5,000	2,000	2,000	1,000

## □ 기대효과

- 성장 가능성 높은 지역전략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로 관내 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및 신규 일자리 창출
- 지역혁신기업에 투자 확대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생태계를 개선하여 지역균형 뉴딜 촉진 효과

## □ 출자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'한국판 뉴딜'을 지역으로 확산한 '지역균형 뉴딜'을 성공시키기 위한 국가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(한국벤처투자)-충청지자체-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 약정한 사업 추진에 차질 우려

## 관 련 법 령

### □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.

8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5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금

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14. 한국벤처투자조합

※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(벤처투자법) 제정('20.2.11.)으로 종전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벤처기업법) 제4조제5항은 벤처투자법 제71조로 이관

### 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□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62조의17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### □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④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벤처투자조합

# 참 고 업무협약서('21.3.29.)

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(물산업 펀드) 조성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

## 충청북도-대전광역시-세종특별자치시-충청남도- 한국수자원공사-한국벤처투자 업무협약서

충청북도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벤처투자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, 충청 지역과 물산업 중소·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업무협약서는 “충청북도”, “대전광역시”, “세종특별자치시”, “충청남도”, “한국수자원공사”, “한국벤처투자” 간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력내용) 각 당사자들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충청 지역 및 물산업 중소·벤처기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‘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(물산업 펀드)’ 공동 조성
2. 충청 지역 및 물산업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
3. 충청 지역 및 물산업 중소·벤처기업과 투자자 간 만남의 장 확대
4. 그밖에 각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

제3조(기밀유지) 당사자들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제공되는 각종 기밀정보와 당사자들의 공동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기밀정보에 대하여 상호간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으며, 이는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다.

제4조(정보제공) 각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 기관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,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한다.

제5조(신의성실의무) 당사자들은 본 협약의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상호 협력하며,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한다.

제6조(법적구속력) 본 협약은 당사자들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서 제3조 외에는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다.

제7조(변경 및 해지) 본 협약의 변경 및 해지는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타)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

당사자들은 본 협약서를 6부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3월 29일

충청북도	대전광역시	세종특별자치시	충청남도	한국수자원공사	한국벤처투자
------	-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---	--------

도지사 이시종	시장 허태정	시장 이춘희	도지사 양승조	사장 박재현	대표이사 이영민
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

이시종 허태정 이춘희 양승조 박재현 이영민